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신공항예정지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대상으로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83호, 2023.05.16. 공포, 2023.11.1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변개발예정지역 대상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대상 지역 추가(안 제6조)

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대상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·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추가함.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7. ~ 9. 15.)

3) 행정규제 : 국조실 사전규제검토 결과 비규제 대상

##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·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말한다.

제6조에 제2항부터 제6항은 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	
연 락 처	(044) 201 - 5209